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1. 16.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3년 1월 4일
- 회부일자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조항 신설 (안 제5조의2)
 - 가)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재산 기준 신설(안 제13조제3항)
 - 가) (기준금액) 취득 20억원 이상, 처분 10억원 이상
 - 나) (기준면적) 취득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(안 제5조제4항 등)
 - 가) 변경 및 삭제된 인용 조문 정비
 - 나) “사용·수익허가” 를 “사용허가” 로 변경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자 감면 조항 신설
(안 제34조제7항)
 - 가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감면
- 관사 구분(1 ~ 3급) 조항 삭제(안 제50조)
- 1·2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항 삭제(안 제55조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,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- 주요내용으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조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 기준을 신설하며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자 감면 조항을 신설함
- 또한,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구분(1~3급) 및 1~2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함

으로써 관사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관리, 운영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함.

- 이외에는 인용 조문·용어 정비 및 「알기쉬운 법령 기준」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,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